

정신과정액, 혈액투석정액 변경사항

정신과정액,혈액투석정액 변경사항

I. 적용일자 : 2021년 4월 1일 진료분

II. 정신과정액 변경사항

- 정액수가외 별도 산정가능항목

1. 입원 기간 중 약품비, 퇴원 투약비용, 마약류관리료
2. 입원환자안전관리료

3. 식대

4. 정신요법료

5. 감염병의 확산 등에 따른 긴급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항목에 대한 비용

약수가등록에 `정신과정액특정항목` 체크박스 추가

정신과정액,혈액투석정액 변경사항

II. 정신과정액 변경사항

- 정신과정액 수가코드 변경

정신질환 입원수가

		수가코드			
		1~90일	91~180일	181~360	361일이상
G1등급		AR341	AR351	AR361	AR331
G2등급		AR342	AR352	AR362	AR332
G3등급		AR343	AR353	AR363	AR333
G4등급	병원	AR544	AR554	AR564	AR534
	의원	AR504	AR514	AR524	AR574
G5등급	병원	AR545	AR555	AR565	AR535
	의원	AR505	AR515	AR525	AR575

정신질환 낮병동 수가

명칭		수가코드
G1등급		AR201
G2등급		AR202
G3등급		AR203
G4등급	병원	AR224
	의원	AR234
G5등급	병원	AR225
	의원	AR235

정신과정액,혈액투석정액 변경사항

II. 정신과정액 변경사항

- 청구방법

1. 2021년 4월 1일 이전 이후 분리청구
2. 정액수가외 별도 산정항목은 X항에만 기재
식대는 X항 82목에 기재
정신요법료는 X항 87목에 기재

정신과정액,혈액투석정액 변경사항

III. 혈액투석정액 변경사항

- 정액수가코드 변경

 - 09992 : 혈액투석 정액수가(병원급 이상)[1회당]

 - 09993 : 혈액투석 정액수가(의원)[1회당]

- 정액수가외 별도 산정 가능한 항목 추가

 - 07021 : 혈액투석에 사용된 재료대와 약제비
투석액

- 프로그램 적용 및청구방법

 - 정액수가외 별도산정항목 등록방법

 - 약수가등록에 `혈액투석 특정항목` 체크박스 추가

 - 투석액은 항목코드 08 목코드 22로 기재

정액수가외 별도산정항목은 Z항 88목에 기재하여 청구